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20일

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| 당사자(건설기술인) | | 처분내용 | 처분의 원인사실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| 주소 | | |
| 박*인 (63.**.04.) | 충북 증평군 (이하생략) | 업무정지 2개월 (2023.3.10.~2023.5.9.) |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내용 누락 |
| 이*갑 (40.**.29.) | 충북 증평군 (이하생략) | 업무정지 12개월 (2023.3.10.~2024.3.9.) |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|

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4조 제1항 제2호, 제3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

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담당자(☎ 042-670-32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